

본 지침은 방역당국 지침 및 유·초·중등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**최저기준을 정한** 것이므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**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** 것이 가능합니다

아울러,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**방역당국의 지침**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,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 등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지침은 **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**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 **본 지침은 2023.2.21.부터 적용**되며,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

(제8판)

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**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·준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2. 21.

교 육 부

주요 개정내용

주요내용	제 7판	제 8판
마스크 착용 (P.4)	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, <u>실외 착용 의무 전면 해제</u>	<p>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(일부 상황의 경우 착용의무 유지 및 착용 권고*)</p> <p>* ① <u>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</u>하는 경우, ② <u>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</u>하는 경우, ③ 최근 <u>확진자와 접촉</u>했던 경우, ④ 환기가 어려운 <u>3밀 실내 환경</u>, ⑤ <u>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</u>가 많은 경우</p>
확진자수 파악 (P.5)	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	삭제
<p>▣ 청서 부분을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: 소독·환기, 식당 및 기숙사 관리,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·운영,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,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(유증상자 발생 시, 확진자 발생 시) 등</p>		

목 차

I. 대응 기본방향	1
1. 기본원칙	1
2.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	2
II. 대학 환경 · 시설 관리	3
1. 학내 환경 관리(공통)	3
2. 학내 시설별 · 상황별 관리	3
III. 상황 발생 시 관리	5
1. 유증상자 발생 시	5
2. 확진자 발생 시	5
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현황	6

1

기본원칙

-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학이 지켜야 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
 -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 기준으로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, 그 간의 축적된 방역 관리역량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 강화
- 대면수업·활동 진행 시, 등교(출근)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(출근)하지 않도록 하여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방지
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,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,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
 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, ‘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’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 및 안내

◆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(23.1.30.~)

구분	방역당국 기준
착용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착용 권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*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*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 ④ 한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장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◆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수칙(생활 방역수칙 안내서 제7판 참고)

구 분	주요 내용
방역 관리	방역관리자 지정,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조치, 권장 방역수칙 게시·안내
마스크 착용	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,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, 코로나19 고위험군 ※ 착용 적극 권고,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참고
사람간 거리 유지	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,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(1m 이상)
손 씻기	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,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환기 및 소독	하루에 3회 이상(회당 10분 이상) 환기, 일 1회 이상 소독

《참고 :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수칙 카드뉴스(질병관리청, '23.2.13.)》



2

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

- (학내 관리체계)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^{*}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대학별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

*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

-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(이하 담당자)를 지정하고, '대학 일상 회복지원단'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

< (참고)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>

- (구성)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(총장 또는 부총장 등), 실무담당자, 학생(반드시 포함) 등
- (기능)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, 학사 운영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
-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**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**

-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업무연속성 계획(BCP)을 주기적으로 현행화*하여 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

*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을 포함하며, 학기별 업무분장 변동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

※ 「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」(교육부, '22.2.10.) 참고

- (학외 협조체계) 교육부 및 유관기관(관내 보건소, 지정의료기관 등)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

1

학내 환경 관리(공통)

- (소독) 공용공간, 통학버스,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일상 소독 강화
 - 주기적 일상 소독, 다빈도 접촉부위(손잡이, 각종 버튼 등) 1일 1회 이상 소독
- (환기)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,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
 - 냉·난방기(공기청정기 포함) 사용 시 **에도, 수시로 자연환기 실시**
※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
- (방역물품) 대학 내 시설에에 손 세정제,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, 보건용 마스크, 체온계,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

2

학내 시설별 · 상황별 관리

- (강의실)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
- (기숙사)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, 기숙사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
 -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,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
 - 의심환자 발생 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기숙사 내 구비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
 -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, 입소 인원 외 외부인 출입 자제
- (교내 식당)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및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

-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, 대학별·식당별 여건에 맞게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
 -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
- (학교 행사)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- 착용 의무장소* 및 착용 권고 대상(장소)를 제외한 실내·외 모두 자율적 착용(마스크 착용 시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)
- * 통학차량, 체험학습·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의 경우 착용 의무 유지

<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(중대본) >

□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경이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

-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·주관 시 아래 사항을 준수

<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>

-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, 학생 인솔, 방역 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
-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
-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자체
-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,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

1

유증상자 발생 시

- (대학) 대학에 비축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를 지원하거나,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
- (학내 구성원)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(자가검사*, 의료기관 방문 등) 또는 진료 실시, 검사 결과 '음성'이면 등교(출근)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·검사 실시(권고)

* 자가검사 결과 '양성'이면 의료기관,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

<유증상자 방역수칙>

보건용 마스크(KF80 이상) 상시 착용,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 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2

확진자 발생 시

- (대학) 확진(본인 또는 동거인)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 - ※ (예시) 학생 : 출석 인정 / 교직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
 - ※ 확진 또는 검사·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,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)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
- (확진자)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(7일 의무) 및 수칙 준수

<확진자 방역수칙>

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 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, 사적모임 자제

- ※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, 동거인(학생 및 교직원)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('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, 음성시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' 권고)
 - ↳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
- ※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

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

* (제외장소) 사무동·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1.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

-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**요양병원**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조)에 따른 **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**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

2. 정신건강증진시설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정신건강복지법"으로 기재)(제3조)에 따른 **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**
 - * (제외시설)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(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), 국립정신병원
-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**정신요양시설**
-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**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** :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, 지역사회전환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종합시설(입소시설)
 - * (제외시설)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(주간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, 생산품판매시설, 종합시설(비입소시설))

3. 장애인복지시설

- 장애인복지법(제58조)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: **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, 피해장애인아동 쉼터**
 - * (제외시설) 지역사회 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, 생산품 판매시설

■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의료기관

- * (제외장소) 사무동·연구동·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(진료·검사·치료·수납 등)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- 지역보건법(제31조)에 따른 **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2조)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**

■ 약사법(제2조)에 따른 약국**■ 대중교통수단**

-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: **노선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**
 - 해운법(제3조)에 따른 **해상여객운송사업**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**해운법(제2조)에 따른 여객선 포함**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3조)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: **전세버스*, 특수여객자동차, 일반택시, 개인택시**
 - *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,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
- 항공사업법(제2조)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**항공안전법(제2조)에 따른 항공기**